

ESG위원회 규정

2022.12.15.



제·개정 이력서

2021년 6월 28일	제 정	Version 1.0
2022년 4월 21일	제1차 개정	Version 2.0
2022년 12월 15일	제2차 개정	Version 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SK가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쟁점을 발굴·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및 ESG 방향성에 대한 이사회의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한다.
- ② ESG 관련 활동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정책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실행 계획 검토를 수행한다.
- ③ 사업분야의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실행·개선하고,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5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음성포함)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토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수정
2. 중장기 계획 및 수정
3.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 ① 전기말 별도 자기자본 2.5%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타법인 출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② 전기말 별도 자기자본 2.5%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 연구개발투자

- ③ 전기말 별도 자기자본 2.5%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영업 양수도
- 4. 회사 ESG 전략 방향
- 5. 전년도 ESG 추진 과제 이행사항 결과 및 당해년도 추진 계획
- 6. 환경 사회 관련 주요 비재무 리스크 요인 및 이슈 사항 및 대응방안
- 7.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
- 8.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
- 9. 안전보건, 인권, 공급망 지속가능성, 소비자 권익 침해 관련 위험 및 기타 ESG 또는 전략 관련 주요 현안으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제10조 (이사회와의 관계)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1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2조 (사무국)

- ① 위원회의 사무는 ESG담당 조직이 담당하며 이사회사무국이 이를 지원한다.
- ②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 ③ 사무국은 ESG, 법무, 재무, 인사 부서를 포함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 현황 자료 및 정보 혹은 업무 협업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사무국은 각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력한다.
- ④ 사무국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⑤ 사무국의 업무에 대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2021.0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